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6.



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알기쉬운법령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,

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(9급 2명)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24. ~ 7. 5.)

총리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”를 신설하고, “행정서기보 2”를 삭제한다.

별표 2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”를 신설하고, “행정서기보 2”를 삭제한다.

총리령 제148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1년 7월 29일”을 “2023년 7월 29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총리령 제148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48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알기쉬운법령팀은 <u>2021년 7월 29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29일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3		
<u>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보</u>			
<u>행정서기보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2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3		
<u>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보</u>			
<u>행정서기보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·	·	·	
·	·	·	